

(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신일학원	②이사장 성명	이 상 균
	③소재지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20(미아동)		
	④전화번호	02-944-5992	⑤FAX	02) 944-5999
	⑥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2. 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⑧총장 성명	허 묘 연
	⑨소재지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미아동)		
	⑩전화번호	02-944-5290	⑪FAX	02) 980-2222
	⑫입학정원	3,270 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 · 경영 학교명	신일 중.고등학교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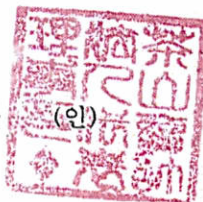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⑭감사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 적정
⑮한정사항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한정사항 : 해당사항없음
⑯특기사항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 해당사항없음.
⑰기타⑮⑯이외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 위반 해당 금액과 내용 : 해당사항없음.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04월 20일

다산 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기 화 (인)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 상 균 귀하

첨부서류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비회계의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그리고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계속;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수익사업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28일과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8길 23

다 산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이 기



2018년 4월 2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4월 20일) 현재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 신일학원 및 그 설치 학교 그리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17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부	부	부	해당없음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부	부	부	해당없음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17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부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0	
2.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는지 여부	부	사립학교법 제29조		0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0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0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0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하였는지 여부	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0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0)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해당사항없음
2. 교비회계: 해당사항없음
3. 수익사업회계: 해당사항없음
4. 부속병원회계: 해당없음
5. 기타 중요사항 : 해당사항없음

(별지 제4호 서식)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사항 집계표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확인 항목		위 반 금 액 (단위 : 천원)				
합 계		법인회계		학교회계		합계
		일반업무	수익사업	교비	부속병원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여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별지 제4의1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별지 제4의1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액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출완료 (불입)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전출완료 (불입)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⑧	자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별지 제4의3호 서식]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⑫	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33조) [별지 제4의4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⑬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별지 제4의5호 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회계연도	2017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 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감사 사항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해당없음				
() 건	계				
② 재산 취득 시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 였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4조)	해당없음				
() 건	계				

(별지 제4-2호 서식)

회계연도	2017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③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1조)	해당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8조의3)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시 산출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사학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계	
	신일중	101,414	7,567	0	108,981	
	신일고	201,548	27,216	0	228,764	
	서울사이버대	372,079	399	0	372,478	
	합 계(A)	675,041	35,182	0	710,223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부담액 (단위:천원)					
	구 분	사학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료	계	
	신일중	101,414	7,567	0	108,981	
	신일고	201,548	27,216	0	228,764	
	서울사이버대	372,079	399	0	372,478	
	합 계(B)	675,041	35,182	0	710,223	
(A-B)	0	0	0	0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26일 법인세 환급금 수령 총 61,262,840원(법인 56,560,000원, 연수원 268,610원, 신일중 39,320원, 신일고 760,09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3,634,820원) · 7월 7일 법인세 환급금 전출 총 4,702,840원(연수원 268,610원, 신일중 39,320원, 신일고 760,09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3,634,820원) · 7월 25일 지방소득세 환급금 수령 총 6,125,790원(법인 5,655,850원, 연수원 26,850원, 신일중 3,890원, 신일고 75,87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363,330원) · 7월 27일 법인세 환급금 전출 총 469,940원(연수원 26,850원, 신일중 3,890원, 신일고 75,87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363,330원)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	·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액	확보액	수입액	수입액의 80%	전출액
	신일중	1,788,504	42,483,949	388,981	311,185	311,185
	신일고	3,007,121				
	소계	4,795,625				
	서울사이버대	14,678,421	42,483,949	388,981	311,185	311,185
	합계	19,474,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횡령 여부 : 해당없음 ·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 여부 : 최대수익 목표로 운용, 법정수익율(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에 미달(0.91%)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 시가 기준 임대운용 하고 있음. · 수익사업회계의 타 회계와 구분 여부 : 구분정리 					

(별지 제4-3호 서식)

회계연도	2017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감사항목	위반내용				위반금액 (천원)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학교법인의 직원 인건비·일반 경상운영비(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내용 : 해당없음				
⑧ 공금의 형령·유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 해당없음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	· 해당없음				
⑩ 이월금 구분(사교·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일반업무회계 : 1,244,50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 설치학교 교육시설비 및 발전 지원금 214,200천원 - 기타이월 : 2018학년도 전출금 등 유동자금 1,030,307천원 · 교비회계 : 442,85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 지급예상퇴직금 등 442,812천원 - 기타이월 : 운영비 1,046천원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 적절하게 이루어짐				

(별지 제4-4호 서식)

회계연도	⑫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명세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제7조 및 제33조)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2017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구 분	중개 회사명	구입 기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매입 회수	총매입액 (천원)	부도/대손처리액		비 고
					매수	금액(천원)	
법인일반 업무회계 수익사업 회계		해당없음					
		계					
교비 회계 부속병원 회계		해당없음					
		계					
합계							
<p>·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p> <p>※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p>							

(별지 제4-5호 서식)

회계연도	㉓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학교법인명	신일학원
2017		대학교명	서울사이버대학교
요청한 세부사항	감사인의 보고 내용	위반금액 (천원)	비 고
	· 해당없음		
() 건	계		
<p>·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p> <p>※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p>			

